

의안번호	2209863
의 퇴 인	윤건영의원
회 답 일	2025. 6. 13.
추계번호	25C2358

체육시설의 설치 ·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6조(보험 가입)	모든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보상 등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에게 보험가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	의무규정 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6조(보험 가입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(안 제26조)

- 개정안은 현행 피해보상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도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면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, 비용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문화체육관광부령¹⁾으로 정하는 소

1) **시행규칙 제25조(보험 가입)** ①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.

규모 체육시설업자는 체육도장업, 골프 연습장업, 체력단련장업, 당구장업,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설치·경영하는 자로서 전체 체육시설업자의 95% 이상으로 확인되나,²⁾ 개정안에 따르면 예산 범위 내 지원을 예정하고 있어 지원요건이 확인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지원비율 및 지원금액을 특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

- 참고로,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등록·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및 소규모체육시설업 손해보험 가입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등록·신고 체육시설업 현황(2024년 말 기준)

(단위: 개소)

등록·신고 체육시설업 (67,205: 100%)	소규모 체육시설(64,227: 95.6%)					
	체육도장업*	당구장	체력단련장	골프연습장	가상체험 체육시설 (골프,야구)	체육교습업**
	16,126	15,477	14,976	8,573	6,201	2,874

* 체육도장업: 권투, 레슬링, 태권도, 유도, 검도, 우슈, 합기도

** 체육교습업: 농구, 물러스케이트, 배드민턴, 빙상, 수영, 야구, 줄넘기, 축구(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30일 이상 교습행위 제공업)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[표 2] 소규모체육시설업 보험가입 현황(주계약, 2022~2024년)

(단위: 건, 원)

연도	가입건수	원수보험료	지급건수	지급금액
2022	8,529	3,715,318	912	2,140,508
2023	9,678	4,190,344	1,078	2,641,292
2024	10,775	4,508,121	1,278	2,732,298

자료: 손해보험협회

1. 등록 체육시설업자 : 시·도지사

2. 신고 체육시설업자 :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

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"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"란 체육도장업, 골프 연습장업, 체력단련장업, 당구장업,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설치·경영하는 자를 말한다.

2) 2024년 말 기준 전체 등록·신고체육시설업 중 소규모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비율은 95.6%임

-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assembly.go.kr